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4조(이익분배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<u>이익금에서 평가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금</u>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②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34조(이익분배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<u>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</u>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<u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. <u>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</u>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	<p>부 칙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